

##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이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7369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9. 15.

발의자 : 임이자 · 권명호 · 金炳旭  
김승수 · 박성민 · 신원식  
엄태영 · 정우택 · 하영제  
한무경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직업소개를 통한 구직자의 인신적 지배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혼중개업, 숙박업 및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직업소개사업자뿐만 아니라 종사자 역시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명확한 문언으로 인하여 종사자는 겸업 금지 의무를 부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종사자의 겸업 금지 의무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직업소개사업의 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26조).

##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직업안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”를 “직업소개사업자(법인의 임원도 포함한다) 또는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6조(겸업 금지) 다음 각 호의  <u>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</u>  <u>경영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을</u>  <u>하거나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</u>  <u>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.</u></p> <p>1. ~ 3. (생략)</p>	<p>제26조(겸업 금지) <u>직업소개사업</u>  <u>자(법인의 임원도 포함한다) 또</u>  <u>는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</u>  <u>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</u>  <u>수행할 수 없다.</u>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